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향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P&B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회 입법정보전문지 P&B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lc@draju.com으로 문의바랍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집	06	1. 구성
	10	2. 관련법령

II.

발의	14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24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25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30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1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32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3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4	10)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35	11)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7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38	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III.

소위원회	40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1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IV.

상임위원회	46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보건복지위원회
	49	1)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V.

본회의	56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	----	-----------------





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구성
2. 관련법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정수 20 현원 20 더불어민주당 11 국민의힘 7 비교섭단체 2



위원장
최민희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정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제19대,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

경기 안산시을
재선(제19대, 제22대)



위원
김우영

서울 은평구을
초선(제22대)



위원
노종면

인천 부평구갑
초선(제22대)



위원
박민규

서울 관악구갑
초선(제22대)



위원
이정헌

서울 광진구갑
초선(제22대)



위원
이훈기

인천 남동구을
초선(제22대)



위원
정동영

전북 전주시병
5선(제15대, 제16대, 제18대,
제20대, 제22대)



위원
조인철

광주 서구갑
초선(제22대)



위원
한민수

서울 강북구을
초선(제22대)



위원
황정아

대전 유성구을
초선(제22대)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김장겸

비례대표
초선(제22대)



위원
박정훈

서울 송파구갑
초선(제22대)



위원
박중권

비례대표
초선(제22대)



위원
신성범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3선(제18대, 제19대, 제22대)



위원
이상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초선(제22대)



위원
최수진

비례대표
초선(제22대)

조국혁신당



위원
이해민

비례대표
초선(제22대)

국민혁신당



위원
이준석

경기 화성시을
초선(제22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특집
발의
수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	소속기관 (5)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공공기관 (49)	한국연구재단
		(부설)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부설)나노종합기술원
		(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한국뇌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국립부산과학관
		(재)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	공공기관 (4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부설)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안정성평가연구소
	CT분야 공공기관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우정분야 공공기관 (4)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유관기관 (5)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방송통신위원회 (8)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소속기관 (1)	방송통신사무소
	공공기관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유관기관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주)문화방송		
원자력안전위원회 (5)	공공기관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유관기관 (2)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법률

부문	소관법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67)	기초원천연구 정책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뇌연구 촉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한국연구재단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거대공공연구 정책관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원자력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천문법
		표준시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 일자리혁신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인재정책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기술사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부문	소관법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67)	정보통신정책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인공지능기반 정책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정책관	전기통신사업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정책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방송진흥정책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정책국 전파법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지식재산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성과평가정책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우정사업본부	별정우체국법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우편법	
	우편대체법	
우편환법		
방송통신위원회 (13)	기획조정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정책국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전파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용자정책국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부문		소관법률
방송통신위원회 (13)	방송기반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단말기유통조사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원자력 안전위원회 (7)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방사선방재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회경호처법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인권정책기본법안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12·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5	공정배상기금법안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교육위원회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3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방위원회		14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1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2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3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폐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9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1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13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1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먹거리기본법안
		22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2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3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4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5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27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집단지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사회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2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3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39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2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주택도시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여성가족위원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031호



구 자 근

선 거 구 경북 구미시갑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3.18. 제안

제안이유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의 형사책임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미미함.

법률규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처벌요건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도 모호해 안전인력을 확보한 대형사업장 조차 법 준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제5조 후단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고, 제4조와 보호대상(종사자)이 동일해 현장 혼란만 초래하고 있음.

또한 경영자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실제 법원은 사망원인을 제공한 법 위반 행위자에게는 징역 1년 미만, 주의감독(과실)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게는 대부분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고 있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법률조항의 불명확성과 처벌의 과도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추진되지 못했음.

이에, 동 법률의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며, 경영자 개인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의 안전보건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과 법인의 벌금수준을 완화함(안 제6조 및 제7조).

2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367호



오 세 희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 속 위 원 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3.26.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에게 특약매입 등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가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되었고, 제품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매입거래 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 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 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납품업자들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둬으로써 납품업자들의 자금 유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3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000호



정 성 국

선 거 구 부산 부산진구갑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 속 위 원 회 교육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3.17.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가 반복되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금융위원회는 상장 관련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미국,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 활발한 상품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이처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짐은 물론, 기초자산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음.

이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29조제3호).

4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203호



이 강 일

선 거 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3.20.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항·제17항, 제14조의2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5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426호



강민국

선 거 구 경남 진주시을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선 거 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3.27. 제안

제안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첨단전략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3년간 17조원)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출 중심의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규제 준수 의무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특히 첨단산업 지원의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함(안 제29조의7 신설).
- 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8 신설).
- 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9조의9 신설).
- 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10 신설).
- 마.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29조의11 신설).
- 바.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0조).

사.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 지원시 한국산업은행이 병행하여 별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41조).

아.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계 법령의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년간·자금지원은 5년간으로 하고, 운용 기간 종료 후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속하는 권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함(안 부칙 제2조)

6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338호



안도걸

선 거 구 광주 동구남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3.25.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첨단제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7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543호



김 소 희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4.02.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8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588호



유 용 원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4.04.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638호



김 병 기

선 거 구 서울 동작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4.07.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통되는 게임물의 상당수는 게임사업자가 정한 일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음.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고,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만 게임물은 이용자들에게 공개 혹은 판매된 이후에도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확률 공개만으로는 게임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게임이용자들은 자신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 중 일부만 확인할 수 있어 게임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수집해 게임사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293호



서 일 준

선 거 구 경남 거제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3.24. 제안

제안이유

조선산업은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나, 최근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이 20% 이하로 하락하면서 국내 조선산업 위기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국 조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중국과의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시설 및 기술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선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조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분야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표준의 제정 및 인증 지원, 조선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조선산업 분야 국제협력과 조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349호



이 언 주

선 거 구 경기 용인시정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3선(제19대, 제20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3.25. 제안

제안이유

2024년 국내 조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256억 3천만 달러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지만,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 이하로 감소하였음.

국내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와 시장 지배력 강화, 조선산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부족 등으로 향후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조선업을 육성하고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 등을 규정하여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첨단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 선박의 실증화를 위하여 첨단 선박 실증센터를 설립하거나 첨단 선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첨단 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해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를 적용함(안 제12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내국법인이 건조한 첨단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첨단 선박의 구입·개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조선업의 진흥을 위하여 첨단조선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조선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스마트야드로의 전환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자.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160호



윤준병
선 거 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횡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3.20.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23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하고, 전체 사업자 중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그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계속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13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735호



윤종군
선 거 구 경기 안성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4.11.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법적 근거 없이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명단 공개를 중단하였음.

그런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명단 공표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II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1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4	한우산업기본법안
		15	한우산업지원법안
		1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453호



이 철 규

선 거 구 강원 동해시태백시
삼척시정선군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 속 위 원 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소 위 원 회	접 수	2024.11.11. 제안
		상정
		2024.11.21. 제안설명
		축조심사
		2024.12.26. 상정
		상정
		2025.02.17. 제안설명
		축조심사
		상정
		2025.04.08. 제안설명
	축조심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
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9.)

제안이유

반도체는 21세기 4차산업혁명·디지털·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관련이 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세계 반도체산업 질서는 설계와 지적재산권, 소재·부품·장비,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국가별 '분업체제'로 재편되고 있고, 최근 AI반도체의 급부상으로 선진경쟁국들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여기에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투자 유치와 자국 내 생산시설 건설, 수출확대 등에 총력태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간에선 대규모 투자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에 제한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음.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2023년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 수출도 20%대를 차지하며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도 장악해왔지만, 시장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세 배 이상 되는 팹리스,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고, 세계 반도체 패권경쟁 및 동맹의 재편과 기술 경쟁 등이 겹쳐 K-반도체 전망은 불투명하며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 직결된다는 냉혹한 현실,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역할과 비중 등을 적극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함.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확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라.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각각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바.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력,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사.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제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8조).
- 아.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도입함(안 제31조).
- 자.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

주요발언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 고동진 위원



일단 고용부 인가 지침으로 주 52시간에 대해서 처음 3개월은 주 12시간을 늘리고 다음부터는 8시간, 그래서 일단 그전에 주 50시간으로 한정돼 있던 거에 분명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달에 만들어진 게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분들 다 잘하시겠지만 반도체가 보면 항상 AI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잘 아

실 거예요. 지난 1월 말에 우리 구정 연휴기간 중 답시크 터졌던 일을 한번 상기를 해 보시면 200 명도 안 되는 인력이, 그것도 중국에서 거의 국내파 인력들이 사무실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일을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데 그 디테일은 사실은 바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반도체라든가 반도체가 서포트하는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과연 주당 근무시간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52시간이 됐든 64시간이 됐든 이렇게 정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저는 작년 6월에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나 특히 스타트업들, MPU 개발하는 회사들 많이 만나 왔는데 진짜 사정

들을 합니다, ‘한 상위 10%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은 좀, 주당 근무시간 정하는 것은 예외로해 주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전체 발목 잡는 것 아니냐, 이게 꼬리가 몸통을 잡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본 법안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아 위원



이미 노동부 고시로 숨통을 틔워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법안에 넣는 것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방금 AI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AI 특별법 만들면서

여기에도 넣어 달라 이렇게 되면 법체
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
까? 우리가 그래도 법을 만드는 입장에
서 고용노동부에서 그 정도로 고시를
마련했으면 그 부분은 이미 현실적인
효과는 발생한 부분인데 굳이 이 법에
넣는다라고…… 저는 넣을 수 있더라

고 봅니다. 이미 고시에 했기 때문에 선
언적 의미에서 넣을 수는 있지만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AI도 넣어 달라, 다
른 산업에도 넣어 달라, 지금 특히나 트
럼프 관세 때문에 수출기업이 다 어려
운데 그러면 우리 수출기업도 넣어 달
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과연 법체

계상 맞을지…… 지금 보수적인 관점
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이미
목적 달성을 이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계
저의 의견입니다.





IV.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4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4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46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4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5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한의학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703호



한 지 아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01.22.	제안
상 임 위 원 회	2025.03.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안이유

생명을 위협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로서 시장 수요와 부가가치가 높아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은 높은 제조 기술 수준과 설비투자 비용으로 인하여 위탁개발 생산 방식을 활용한 제품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추세임.

이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수출을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자와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수탁 받은 의약품제조업자의 적합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다.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 및 품질 인증 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라.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자, 의약품제조업자,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참고자료**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주요 특성 비교¹]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원료	합성화학물질	생물체 유래물질 (세포, 조직, 유전물질 등)
원료의 고려사항	품질 (시험분석으로 확인 가능)	시험분석으로 확인가능한 품질 외에 공여(기증)자의 동의 등 윤리성, 감염질환 확인 등 안전성 확보 필요
구조	물리학적 특성이 명확한 저분자 구조	정확한 특성 분석이 불가능하고, 활성과 구조가 일정하지 않음
제품의 안전성	대부분 온도 · 빛 등 환경에 안정적	온도 · 빛 · PH 등 외부 환경에 민감, 미생물 오염에 취약
	대부분 36개월	(세포치료제) 대부분 3일 이내 (유전자치료제) 영하 135도에서 24개월
제조	- 간단한 화학적 합성으로 대량 생산 - 원료, 공정, 설비변화가 품질에 영향이 비교적 적음(제조공정의 변이성이 매우 낮음) - 상대적으로 복제가 쉽고 낮은 제조 비용	- 복잡한 제조과정의 맞춤형 소량 생산 - 원료, 공정, 설비의 변화가 의약품 자체를 변화(제조공정의 변이성이 매우 높음) - 복제가 불가능하고 높은 제조 비용
치료 효과	- 비교적 명확한 약리 기전으로 대다수 사람에게 일관적 효과 기대 - 대부분 질병의 증상 개선에 그침	(세포치료제) 약리기전이 불확실 (유전자치료제) 복합적인 기전 - 환자에 따른 맞춤형 치료,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 가능
안전성 (이상반응)	약물 특이성이거나 약물 대사와 관련된 이상 반응	생물체 유래로 고유 독성은 낮으나 면역거부 반응, 종양발생 등의 이상 반응
비임상 시험	동물 시험을 통하여 약물의 독성 및 효과를 예측 가능	동물 시험으로 인체 결과를 예측하는데 한계
투약법	대부분 경구/주사 등 일반적 투여 경로	대부분 주사 또는 주입, 이식 등 기술을 동반한 투여

1. 김용민. 바이오의약품 산업 분석 및 정책 연구. 충청북도: KHIDI(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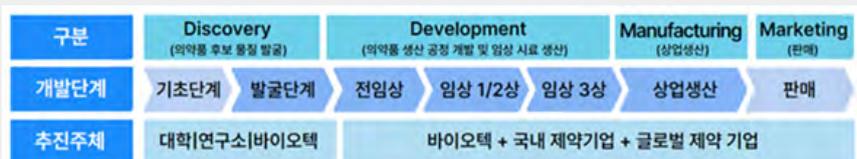
[의약품의 개발단계 및 추진주체에 따른 구분]

***위탁개발생산 (CDMO,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제품 개발(Development)부터 분석(Research) 및 제조(Manufacturing)까지를 하나의 통합된 프로세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위탁생산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제품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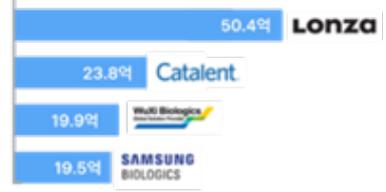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 현황]

□ (시장규모) 글로벌 CDMO 시장은 '22년 196.8억불에서 연평균 14.3% 성장하여 '29년 438.5억불 전망 (Frost&Sullivan, 2024)
 * 시장규모(억불) : '22) 190.1 → '24) 217.7 → '26) 283.9 → '28) 378.2 → '29) 438.5

글로벌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



글로벌 CDMO 기업 매출 (23년)



□ (분야별)

분야	규모(억불, '23 → '29) (증가율)
항체치료제	127.9 → 208.7 (8.5%)
백신	25.9 → 36.4 (5.8%)
CGT	31.4 → 174.7 (33.1%)
단백질 등	11.6 → 18.7 (8.3%)

□ (지역별)

지역	규모(억불, '23 → '29) (증가율)
유럽	74.9 → 175.6(15.3%)
북미	94.2 → 172.9(11.0%)
아태	25.3 → 82.0(22.0%)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내수용 의약품 중심의 규제인 현행 약사법 체계에서는 위탁개발생산 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맞춤형 규제를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위탁개발생산 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업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및 위탁개발생산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등을 위해서 법률에 기반한 정부의 인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안정적·체계적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 안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지원은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개별법에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를 두는 것은 비과세와 조세 감면사항을 통합 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제정안 제15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안 제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 여부는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제정안과 같이 세제 지원 특례를 규정할 경우 일반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며,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제정안 제15조는 삭제가 필요함.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현재 많은 국내 기업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정안을 통해 국내 CDMO 기업의 사업 안정화 및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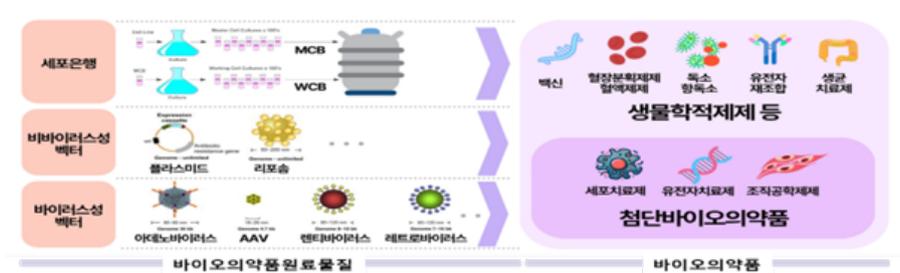
제정안은 수출제조업 신설 및 GMP 적합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당국의 관리체계를 통한 GMP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 전문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원료물질 인증을 통해 해외 수입 원료 의존도를 낮추는 등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공급망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따른 바이오의약품의 종류]

구분	설명 및 예시사진	
생물학적 제제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 (백신)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 등 - (혈장분획제제) 인슐린, 면역글로불린 등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유전자 조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 예시> 인슐린 성장호르몬 등	
세포배양 의약품	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 예시> 인터페론 알파	
첨단바이오 의약품	(세포치료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 * 예시> 카티스템, 셀그램	
	(유전자치료제) 유전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것으로서 유전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 * 예시> 킴리아, 줄겐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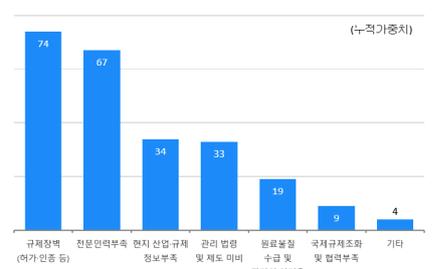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과 원료물질 개념도]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업계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²⁾]

CDMO 활성화 위한 정부 지원 필요사항	CDMO 활성화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
<p>(누적가중치)</p>  <p>※누적가중치: 선택지 중요도 순으로 환산하여 누적된 가중치</p>	<p>(누적가중치)</p> 
① 국내·외 GMP 인증지원 ② 규제·산업 정보제공 ③ 전문인력 교육지원 ④ 국제 규제조화 등 국제협력 ⑤ 세제지원 강화 ⑥ 원료물질 등록관리 제도 도입 등	① 규제장벽(허가인증 등) ② 전문인력 부족 ③ 현지 산업·규제 정보 부족 ④ 관리 법령 및 제도 미비 ⑤ 원료물질 수급 및 관리의 어려움 ⑥ 국제규제조화 및 국제협력 부족 등

2. 자료: 첨단바이오의약품등 위탁개발생산 관련 규제동향 조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2024년) - 총 57명(45개사) 응답. '24.3월

참고 국내·외 CDMO 기업 및 해외 주요국의 CDMO 산업 지원 현황³

□ 국내·외 CDMO 기업 현황

- (글로벌) 글로벌 CDMO 시장확대 예상에 따라 글로벌 기업간 생산캐파 확대* 및 품질·가격경쟁은 더욱 심화

* 캐파('23→'26,만L):(삼바)60.4→78.4, (베링거)41→54.5, (론자)31.5→47.5, (우시)27→58.2

[글로벌 CDMO 상위 5대 기업 현황]

(단위: 백만불)

기업명	'23 매출 (시장점유율)	특이사항
Lonza	5,038 (25.6%)	글로벌바이오의약품 CDMO 1위, 전세계 107개 사업장 세포주 개발-무균충전까지 전주기 서비스 제공
Wuxi Biologics	2,381 (12.1%)	중소형 CDMO로서 비임상-임상-상업생산 전주기 지원, 생산시설은 중국(5개), 미국 3개(1개 건설중) 등 총 8개
Catalent	1,988 (10.1%)	바이오의약품 충전 및 마감공정분야 서비스 제공에 상대적 차별화
삼성 바이오횰스	1,948 (9.9%)	고객사는 글로벌 바이오기업 50여개, 생산시설은 한국 4개(1개 건설중), 美샌프란시스코 R&D 센터보유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1,338 (6.8%)	'23에 CGT분야 기술 확대를 위해 200억불 투자

* 기타 시장점유율 : 베링거인겔하임(5.8%), AGC바이오횰스(4.4%), 기타(25.2%)

- (국내)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도 CDMO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 등 통해 세계 1위 CDMO 생산시설 확충하는 등 경쟁력 확보

- **(삼성바이오횰스)** '25년 4월 제5공장 완공 시 78.4만L 규모 생산, 세계 1위 규모*
* 기존 글로벌 CMO 1위 역량(론자, 약 63만L)을 초과하여 세계 1위 도달 전망
※ 現 60.4만L 생산 가능, '32년까지 제2바이오캠퍼스 제6~8공장 순차 준공 시 총 132.4만L 생산
- **(롯데바이오횰스)** '25년 말 송도바이오캠퍼스에 12만L 규모 제1공장 준공 예정
※ '27년 제2공장(12만L), '30년 제3공장(12만L) 완공 시 총 36만L 생산 가능
- **(셀트리온)** '24년 6만L 규모 제3공장 준공
※ 現 제1공장(10만L), 제2공장(9만L)과 함께 총 25만L 생산 가능
- **(차바이오)** 미국 텍사스에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맞춤형 CDMO 시설 완공('22, 국내최초)
- **(SK바이오사이언스)** 독일 CDMO 기업 IDT 바이오횰지카 인수, 사업영역 확장(백신 개발·생산, 항암 바이러스,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 **(대웅바이오)** 미생물 기반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 위한 공장 준공 완료(1k)
※ '27년 식약처, '28년 미국 FDA 승인 목표

□ 해외 주요국의 CDMO 산업 지원 현황

① (미국) 中 의존도 완화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재편 추진

- 바이오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 역량 확대 및 중국 견제 추진

* 국가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22.9월)

美 하원 생물보안법 발의 및 통과('24.9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② (일본) 공격적 투자 · M&A로 CDMO 제조시설 확보

- “바이오의약품 제조거점 정비사업(’22년)”, “CDMO 지원 강화 계획(’24.5월)” 발표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반 강화 추진

* ’23년 기준 약 3조 2,560억원 사업비로 ’22년 17개社, ’23년 23개社를 대상으로 자국 내 생산을 지원 중(일본의 의약품 CDMO 투자 및 산업동향, 한국바이오협회)

③ (인도) 합성의약품 점유율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 CDMO로 생산역량 투자 확대

- 자국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의약품,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를 6년간 재정 지원하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PLI)*’ 도입

* ’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출발물질, 중간체, 원료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41개 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인도의 의약품 CDMO 투자 및 산업동향, 한국바이오협회)

④ (중국) 美 시장 대체를 위한 유럽 등 제3국 저변 확대 모색

- 시진핑의 ‘혁신신약 · 생산력 확충’ 전폭 지원 선언(’24.4월)에 따라 혁신기업 · 첨단 R&D에 대규모 금전 지원 추진 등 자구책 모색



V.

본회의

1. 통과 법률안 목록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olicy & Business
Report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제안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 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 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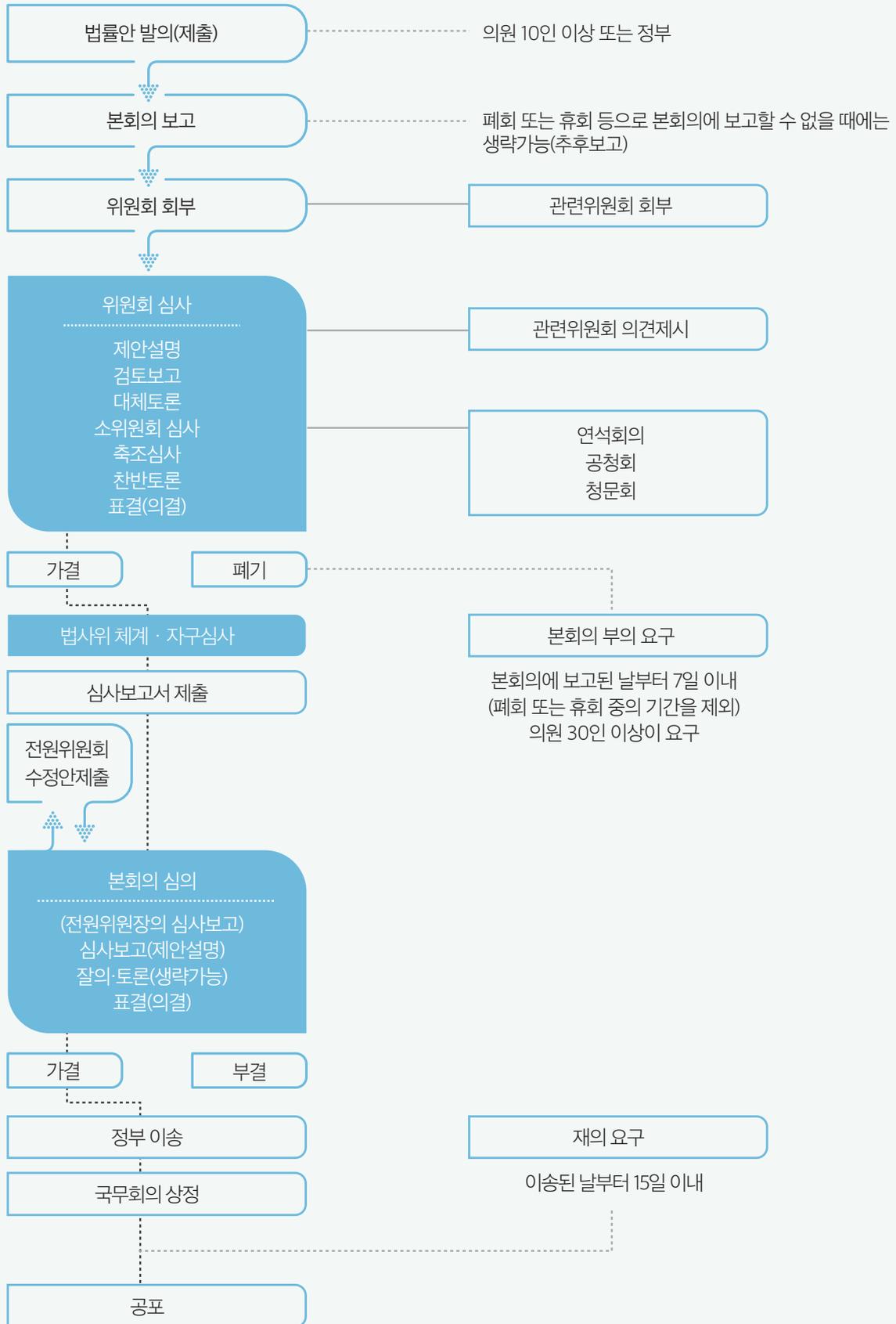
공포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R & B Policy & Business Report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19층
www.draju.com